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 12. 18.(수)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4.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11
5.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14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20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11.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0
12..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35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아워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02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양질의 일자리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하는 주 요인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유치 및 지원과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 정비(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16조)
- 출자·출연기관 대상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사항 규정(안 제16조의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술보증기금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세수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미래세대인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청년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층 인구의 유입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며 이것은 다시 기업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입니다.
- 달성군은 대구 경제발전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산업단지 (1), 일반산업단지(5), 농공단지(2) 8개소를 비롯 민선 8기에 들어, 제2 국가산업단지 유치,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유치, 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양질의 기업에 대한 유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역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03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인한 분뇨 발생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 방지 및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가인상률과 원가분석 용역결과 수수료 산정 반영 근거 신설(안 제7 조제3항)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하여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02년 당시 환경부는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의 해’ 를 선포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의 급감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정부는 2009년에 ‘분뇨수집·운반업체 보상요구관련 대책’ 을 발표하고 2011년에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 대구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의 목표를 80%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체의 분뇨 수집량은 더욱 감소되고, 분뇨차량 운송비의 상승, 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수수료 산정 시 물가인상률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악화를 방지,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구·군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단위: 원/톤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기본요금 (0.75㎡ 까지)	19,090	19,160	19,090	19,390	19,200	19,420	18,900	15,280	12,750
초과요금 (0.1㎡ 초과)	1,710	1,680	1,680	1,680	1,680	1,720	1,640	1,680	1,700
1톤당 수수료	23,365	23,360	23,290	23,590	23,400	23,720	23,000	19,480	17,000
변경일자	2022.12.12	2022.12.20	2022.10.11	2023.3.10	2022.12.26	2022.12.20	2022.12.12	2022.12.12	2016.12.16

주) 달성군: 건당 3,400원 업체지원

- 유사광역시 수수료 기준

단위: 원

구분	대구(평균)	부산(평균)	인천(평균)	광주(평균)	대전(평균)	울산(평균)	비고
기본요금 (0.75㎡ 까지)	18,031	23,492	20,700	17,624	15,860	15,040	
초과요금 (0.1㎡ 초과)	1,686	1,726	1,600	1,854	1,840	1,087	
1톤당 수수료	22,245	27,807	24,700	22,259	20,460	17,758	

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평균에서 제외

단위: 원

구분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기본요금 (0.75㎡ 까지)	15,280	25,260	13,390	12,060	17,270
초과요금 (0.1㎡ 초과)	1,680	1,780	978	1,750	1,260
조례개정일	2022.12.30	2022.05.01	2008.01.07	2023.12.27	2023.12.28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60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27일
- 제 출 자: 신달호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4년 8월에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¹⁾가 발생하는 등 전기자동차 화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단시간 내 확산 가능성이 높으며,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을 보이고, 배터리가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으며, 상위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건축 트렌드가 지상공원화로 주차장이 지하에 많아 전기차 화재 피해가 더 우려되고

1) 차량 40여대 소실 및 100여대 열손 및 그을음, 정전으로 인한 47세대 122명 임시주거시설 이용 등

있으며, 지하에서 지상으로 충전시설을 옮기기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 군의 경우 지난 9월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차량 사용 부서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 이에 더하여, 사회재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전기차 화재발생 현황

'19년(7건) → '20년(11건) → '21년(24건) → '22년(43건) → '23년(72건)

구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39	13	0	13	3,255,432
2021년	24	1	0	1	878,084
2022년	43	3	0	3	913,362
2023년	72	9	0	9	1,463,986

자료: 소방청 보도자료(24.4.12.)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소비심리 위축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5. 2. ~ 자금 소진 시

○ 출연금액 : 10억 원(출연 시 보증 규모 120억 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제7조(기본재산), 제9조(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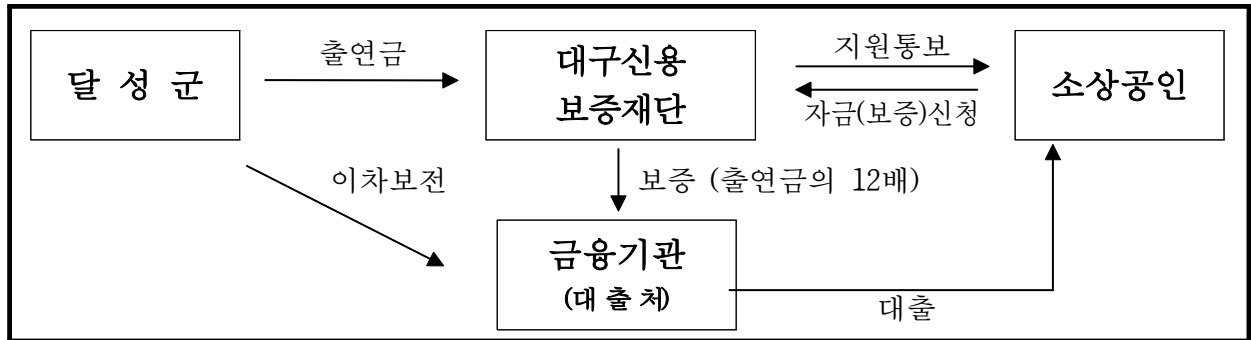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과의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의 보증 규모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전액보증을 하면,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 운용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업무처리 흐름도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1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군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사업기간 : 2025. 2. ~ 자금소진 시

- 사업규모 : 150억 원(출연금 10억 원의 15배)
- 사 업 비 : 10억 원(군비/출연금)
- 사업내용 : 기술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5억 원
- 특례기한 : 최대 3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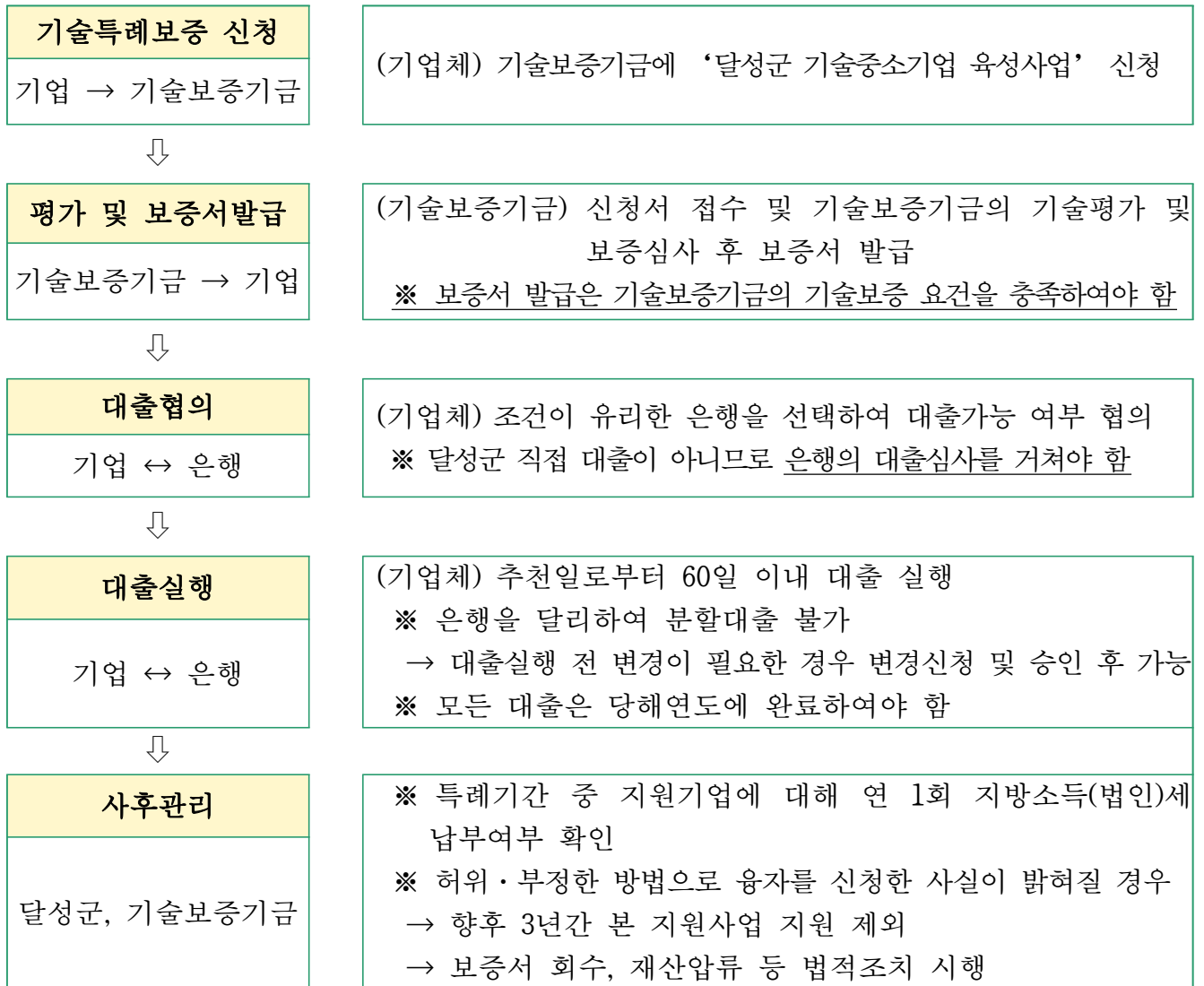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기술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달성군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후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출연금의 15배인 최대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 중소기업은 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달성군 내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금을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달성군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방 소득세(법인세) 납부여부, 융자금의 적정한 사용여부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관내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업무처리 흐름도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3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기존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중심 일자리 상담 및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안 제1조)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3조)
-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직업안정법」 제4조의2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 되어 민간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내수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각종 기업지원 사업 안내 등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구직자 중심의 기존 달성 종합일자리센터(현풍 취업안내센터 상담사 1, 논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사 1)를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로 일원화(상담사 6)하여 기존 일자리센터의 구직자 중심 상담에 더불어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장기간의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목적(안 제1조)
- 지원대상 및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이차보전금의 지원 중지 및 업무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이차보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본 조례의 제2조(정의)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규정하여 자금의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안 제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기준 지자체 자율지정 알림 (중기부 전통시장과-173호, '24. 1. 22.) 통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할 경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것을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의 구역 내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개 이상이 밀집할 경우로 개정하고, 면적 산정 시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따라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과-2181, 2024.10.4.)와의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2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달성군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 소재지 :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
- 규 모 : 전용면적 202.5㎡(61평) 정도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기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
 -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센터장	상담사	비 고
인 원	6	1	5	우리군 직업상담사 2명 포함

○ 위탁기간 : 3년(2025 ~ 2028)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직업안정법」 제4조의2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 선정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센터의 위치 및 규모는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에 전용면적 202.5㎡(61평)이며, 센터의 주요 업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취업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 관내 기업 및 구직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추진 경력 및 성과를 갖춘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선정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6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 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4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3항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정비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장례·유족보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 항목 중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민원·공공서비스의 증가로 관공서 발급 구비서류 요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도 증가하여, 정부는 그동안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체감 효과가 높은 사무부터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고,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기폐지된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

-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청구 관련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감증명 폐지
(서울 양천구, 인천 남동구, 울산 남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등이 조례에서 인감증명을 삭제)
-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관련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신청 관련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신청 관련으로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감증명 폐지
-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 청구 관련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 인감증명 폐지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 관련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인감증명 폐지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관련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인감증명 폐지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7호
- 제출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09.)

2. 제안사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30개소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 246개소

□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61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246개소 0.8km²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230개소 0.7km²임.

(2024. 09. 30. 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A=B+C)		집행 (B)		미집행(C)						집행률 (%)
						소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	계	3,061	15,789,503	2,815	14,988,908	246	800,595	16	98,586	230	702,009	92.0
도로	소계	2,328	5,717,833	2,145	5,433,563	183	284,270	13	49,270	170	234,712	92.1
	중로	328	2,417,913	326	2,394,505	2	23,408	-	-	2	23,408	99.4
	소로	2,000	3,299,632	1,819	3,039,058	181	260,574	13	49,270	168	211,304	91.0
주차장	노외주차장	108	212,988	78	196,527	30	16,461	-	-	30	16,461	72.2
케도	케도	1	46,636	-	-	1	46,636	1	46,636	-	-	-
광장	경관광장	1	19,812	1	19,812	-	-	-	-	-	-	100.0
공원	소계	92	219,540	73	155,992	19	63,548	-	-	19	63,548	79.3
	어린이공원	67	146,364	62	138,478	5	7,886	-	-	5	7,886	92.5
	소공원	22	16,968	10	8,126	12	8,842	-	-	12	8,842	45.5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	-	2	46,820	33.3
녹지	소계	190	1,795,978	178	1,737,735	12	58,243	2	2,680	10	55,563	93.7
	완충녹지	134	1,565,915	122	1,507,672	12	58,243	2	2,680	10	55,563	91.0
	경관녹지	46	139,283	46	139,283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100.0
공공공지	공공공지	88	230,997	88	230,997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743	4	1,109,018	1	331,725	-	-	1	331,725	80.0
기타시설	기타시설	248	6,105,264	248	6,105,264	-	-	-	-	-	-	100.0

□ **군의회 보고 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230개소)

(2024. 09. 30. 기준)

시 구 설 분	시 세 설 분	시 설 수										미 집 행 면 적 (천㎡)
		소 계	화 원	논 공	다 사	유 가	옥 포	현 풍	가 창	하 빈	구 지	
총 계		230	17	4	37	1	32	3	94	41	1	702
도 로	소 계	170	13	4	29	-	25	1	68	30	-	235
	중 로	2	-	1	-	-	-	-	1	-	-	23
	소 로	168	13	3	29	-	25	1	67	30	-	212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30	3	-	5	-	5	-	11	6	-	16
공 원	소 계	19	1	-	3	1	2	-	8	3	1	64
	어 린 이 공 원	5	-	-	1	-	-	-	2	2	-	8
	소 공 원	12	1	-	2	-	2	-	6	1	-	9
	문 화 공 원	2	-	-	-	1	-	-	-	-	1	47
녹 지	완 료 녹 지	10	-	-	-	-	-	1	7	2	-	56
연 구 시 설	연 구 시 설	1	-	-	-	-	-	1	-	-	-	331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246개소)

(단위 : 천㎡, 억 원)

시 설 구 분	합 계			2025년 ~ 2027년 (1단계)			2028년 ~ 2030년 이후 (2단계)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총 계	246	801	5,512	189	278	1,006	57	523	4,506	
소 계	245	469	1,749	189	278	1,006	56	191	743	
도 로	183	284	1,154	133	190	775	50	94	379	
주 차 장	30	16	67	30	16	67	-	-	-	
공 원	19	63	141	16	16	88	3	47	53	
녹 지	12	59	86	10	56	76	2	3	10	
궤 도	1	47	301	-	-	-	1	47	301	
연 구 시 설	1	332	3,763	-	-	-	1	332	3,763	DGIST (국·시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061개소 중 미집행 시설은 246개소 0.8km²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70개소, 주차장 30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0개소, 연구시설 1개소로 총 230개소 0.7km²입니다.
- 2025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제1단계 (2025년 ~ 2027년) 사업은 도로 133개소 등 189개소에 대하여, 제2단계(2028년 ~ 2030년 이후) 사업은 도로 50개소 등 57개소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참고자료 - 제309회 제2차 정례회 군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3. 10. 31. 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계		44	89,730	
	도로	합계	40	42,335	
		중로	1	7,911	논공읍 1개소 화원읍 1개소
		소로	39	34,424	논공읍 2개소 다사읍 9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1개소 하빈면 10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13	안박실주차장(가창)
	공원	합계	3	47,182	
		소공원	1	362	안박실공원(가창)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구지) 굿발골공원(유가)

○ 2024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52개소(군비 251, 국·시비 1)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단위 : 천㎡, 억 원)

구분	시설구분	합계			2024년 ~ 2026년 (1단계)			2027년 ~ 2029년 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252	834	5,481	194	246	933	58	588	4,548
군비	소계	251	502	1,718	194	246	933	57	256	785
	도로	189	317	1,143	138	203	760	51	114	383
	케도	1	47	301	-	-	-	1	47	301
	주차장	30	16	75	30	16	75	-	-	-
	공원	19	64	113	17	17	63	2	47	50
	녹지	12	58	86	9	10	35	3	48	51
국·시비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5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금3,457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 금1,002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자체사업비 출연 : 금2,455백만 원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출연 계획안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 문화예술 중심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한 각종사업 - 달성 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YES! 키즈존, 달성문화교차로, 달성군립합창단, 달천예술창작공간 및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등 -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적정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달성군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 예술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89호
- 제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13조)
-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 현실화(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달성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운영비 증가로 인한 시설 이용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로 수영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및 그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주민의 요금 인상에 대한 체감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로, 수영장 주5회 이용료의 경우 기존 77,000원에서 88,000원으로 14.3%, 주3회는 54,000원에서 62,000원으로 14.8% 인상하였으며, 헬스장의 월 이용요금은 50,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0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속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 현행화(안 제3조)
-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9조)
-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 구체화(안 제11조)
- 사용료 인상 및 부가가치세 삭제, 부속시설 종류 현행화(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배상 책임 기준 및 안전사고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시설 종류 및 사용료 등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속시설 중 기 철거된 음향 및 조명시설 내용을 삭제하고 사용 허가에서 영리목적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화하여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공연장 운영의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사용료도 타 자치단체의 야외 공연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이용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소폭 인상 하였습니다.

-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 안전사고 조치 기준 명확화를 통한 사용자의 주의의무 강화 그리고, 사용료 및 부속시설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1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신설된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함
- 공공요금 인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세분화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제6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반기별 점검 의무화
- 안[별표1] 신설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추가반영
- 안[별표2], 안[별표3] 공공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및 수요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
- 안[별표5] 사용료의 감면 항목 중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사용료 감면 비율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2019.10.21.의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설(옥포 파크골프장,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 중 미반영된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하고
-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용료를 조정·현실화하고 수요에 따른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 세분화 및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달성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제2019-483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체육시설 관리상태 등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예 : 반기별)을 의무화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 제6조제3항을 “그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 “수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로 개정하는 조례안은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기 존 안	개 정 안
<p>제6조(시설의 개방)</p> <p>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u>그 활용상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6조(시설의 개방)</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보수하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2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달성군 파크골프장의 명칭에 지역 위치를 반영하고 시설을 현행화하여 기존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시설 명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명칭 및 위치) 개정 및 현행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 명칭에 지역 위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파크골프장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 기존 시설(옥포 파크골프장, 현풍 원오 파크골프장) 중 미반영된 신규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3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건축물 및 그 외 시설물 통합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문진 역사공원 내 시설물 조항 삭제 및 신설(안 제4조)
- “달성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로 변경(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69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념비 및 조형물 등 경미한 시설물을 제4조제1항 제10호 ‘그 밖의 구조물 및 조형물’에 통합하여 포함시키고, 주요 시설물인 매표소, 워터스크린 분수대(피아노분수)를 신설 추가하는 등
- 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 건축물을 포함하여 주요 시설물 및 그 외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명시하여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4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사문진 폐쇄시설물에 대한 조례 내용 삭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형보트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3호)
- 강정고령보 계류장 명칭 및 위치 삭제(안 제3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6조2항2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사항 적용(안 제10조1항)
- 사문진 유람선 이용료에서 소형보트 삭제(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문진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를 구체화하여 명시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재 수상이용시설의 유람선 단일화에 따라 소형보트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상시설의 위치를 강정보계류장 폐쇄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문진 나루터로 하였으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4항에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바,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비상상황 발생 또는 선원의 지시가 있을 때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상이용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5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비슬산유스호스텔 단체 이용객의 기준을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여 비슬산유스호스텔의 단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체”의 정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 13조1항)
- 부대시설에 중회의실 추가(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자연휴양림, 화석박물관 등 단체 적용 기준을 20명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비슬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서도 “단체”의 정의를 “4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 또한, 기업 워크숍 및 영어마을 운영결과 소회의실만으로는 회의 및 교육 등에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체력단련실)을 중회의실(74㎡ 정도)로 개선 운영하여
-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아울러 비슬산유스호스텔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달성군 단체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별표1 단체 20인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단체 기준 20인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별표1 단체 20인 이상

○ 타시군구 유스호스텔 단체 규정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5.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남군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정의) 4. “단체”라 함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정의) 3.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4.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벨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6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낙동강레포츠벨리의 시설 이용 및 추가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를 구체화하여 명시(안 제5조2항)

- 시설이용료 반환 기한 설정(안 제7조)
- 사용자 시설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조정(안 제8조)
- 사전예약제 운영 내용 및 시설이용료의 선납 기한 변경(안 제11조)
-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변경(안 별표 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강레포츠밸리의 시설 이용 및 추가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시설이용료, 이용시간 및 추가이용료, 사전예약제 운영 등은 조례상 구체적인 시기, 금액,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을 예방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시설이용료 기준을 마련,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시설 이용 관련 주요 변경 내용

- 시설이용료 반환 시기 - 5근무일(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내 반환
- 추가이용료 - 1시간 1만원, 3시간 이상 1일치 이용료 부과
- 사전예약제 - 24시간이내, 예약후 1시간, 입금방법으로 개선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산 시스템상 다음달에 결제

→ 예약취소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 사전예약제 적용범위 및 대상자가 명시 구체화

- 시설범위 - 전체시설의 50% 이내
- 대상자 - 달성군민, 등록장애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7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운영사항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이용시간 조정(안 제5조)
- 시설사용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8조)

- 용어의 뜻, 시설 명칭 변경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 별표1)
-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시설의 이용시간과 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인상하여 동일유형의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사용, 이용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연휴양림의 운영 현실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등 현행 시설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시설 사용 시간 비교

구분	비슬산·화원 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공립(지자체)자연휴양림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청도자연휴양림 (청도군)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영천시)		장곡자연휴양림 (군위군)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칠곡군)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사용 시간	15시	12시	15시	11시	15시	11시	15시	11시	14시	11시	15시	11시

○ 시설 사용료 비교(현행 기준)

- 자연휴양림

시설구분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비슬산자연휴양림 사용료			화원자연휴양림 사용료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5인실 (29-33㎡)	58,000	106,000	4인(29㎡)	60,000	90,000	-	-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	-	8인실 (50㎡)	100,000	140,000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10인 (67㎡)	120,000	180,000	10인실 (68㎡)	130,000	180,000
	산림 문화 휴양관	4인실 (19-28㎡)	44,000	76,000	4인(21㎡)	50,000	70,000	4인실 (29㎡)	60,000	90,000
		5인실 (29-33㎡)	56,000	102,000	5인(30㎡)	60,000	90,000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9인(60㎡)	110,000	160,000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16인 (96㎡)	140,000	200,000	16인 (101㎡)	170,000	240,000

- 오토캠핑장

구분	비슬산휴양림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팔공금화자연휴양림(칠곡)			송정자연휴양림(칠곡)		
	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기준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캠핑 데크	7*4 (28㎡)	15,000	20,000	30,000	데크4*6 숲속3*6	20,000	25,000	-	-	-	24㎡	20,000	30,000
	8*5 (40㎡)	20,000	30,000	40,000	66㎡ (오토)	30,000	35,000	-	-	-	-	-	-
	-	-	-	-	-	-	-	-	-	-	86㎡ (오토)	30,000	40,000
	-	-	-	-	-	-	-	-	-	-	160㎡ (오토)	40,000	60,000
카라반	4인	60,000	80,000	100,000	4인	100,000	140,000	-	-	-	4인	60,000	100,000
	6인	80,000	100,000	120,000	6인	-	-	6인	70,000	120,000	6인	80,000	120,000
	8인	100,000	120,000	140,000	-	-	-	-	-	-	8인	100,000	140,000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98호
- 제 출 일: 2024년 11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2월 5일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2024.12.10.)

2. 제안사유

-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체험료 반환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험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7조)
- 체험료 감면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의 혜택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에 따라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반환일을 5근무일 이내로 규정하는 요금 반환규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체험료 반환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